

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① 근로기준법 제17조 (근로조건 명시) * 500만원 이하 벌금	■ 근로계약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? * 서면 작성 + 근로자에 교부	☐ 준수 ☐ 미준수
	■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? * ①임금(항목·계산·지급방법), ②소정근로시간, ③유급휴일, ④연차유급휴가 등 [표준 근로계약서 참고]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 명시)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임금, 2. 소정근로시간, 3. 제55조에 따른 휴일, 4.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		
② 근로기준법 제36조 (금품 청산) 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	■ 근로자가 사망·퇴직시 임금,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? * 해고, 합의 해지,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 해당 *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(연 20% 지연이자 포함)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36조(금품 청산)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, 보상금,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		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③ 근로기준법 제43조 (임금지급) 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	■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? * 다만, 법령·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,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 * 친권자, 법정대리인,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 대신 지급 불가	☐ 준수 ☐ 미준수
	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? * 다만,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,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임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43조(임금지급) ① 임금은 통화(通貨)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, 수당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*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근수당, 근속수당, 장려금,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등을 말함		
④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(임금명세서) * 500만원 이하 과태료	■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? * 임금의 지급일, 총액, 구성항목, 계산방법, 공제내역 ✓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·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작성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시 시간 수 포함)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48조(임금명세서)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,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		
⑤ 근로기준법 제50조 (근로시간) 5인 미만 미적용 *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	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? * 성인: 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 * 연소자(18세 미만): 일 7시간, 주 35시간 이내 ※ 13세 이상 근로 가능(13세 미만은 예술공연만 가능) ※ 13~15세 미만 근로시 취직인허증 필요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.		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⑥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(주휴일)	■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(주휴일)을 부여하고 있는지?	☐ 준수 ☐ 미준수
제2항 (관공서 공휴일) 5인 미만 미적용 *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	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? * '21.1월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, '22.1월부터 5인 이상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.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.		
⑦ 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·휴일근로) (연장·야간·휴일근로) 5인 미만 미적용 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	■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 지급했는지? * (연장) 법정 근로시간(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) 초과, 다만, '23.12.7. 대법원(2020도15393) 판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일 40시간을 초과했는가로 판단(단시간근로자도 주 단위로 소정 근로시간 초과 판단) * (야간) 22시 ~ 06시 * (휴일)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시 100% 가산(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 가산 수당만 지급)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·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1.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.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: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		

법 조항	진단 사항 및 방법	진단 결과
⑧ 근로기준법 제60조제1·2항 (연차유급휴가) 5인 미만 미적용 *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	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? *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, 1년간 80% 미만 출근 또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해야 함	☐ 준수 ☐ 미준수
	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는지?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		
⑨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(최저임금 효력) *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	■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? * ('23년 최저임금) 시간급 9,620원 / 일급(8시간 기준) 76,960원 / 월급(209시간 기준) 2,010,580원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최저임금법 제6조(최저임금의 효력)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		
⑩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(퇴직금) *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	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? * 지급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함('22.4.14. 시행) ↳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통장을 개설토록 안내 필요	☐ 준수 ☐ 미준수
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(퇴직금의 지급)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(이하 “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”이라 한다)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